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7-97
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1. 16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의 연장 및 존속기한을 조례 안에 명시하고, 기금의 관리·운용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관리·운용 내용의 범위 확대(안 제4조제3항)

- '해당 연도 이자수입' 를 '이자수입'으로 개정하여 전년도의 불용액으로 남아있던 이자수입까지 기금사업에 쓸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

나.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및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시(안 제4조의2)

- "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" ⇒ "2022년 12월 31일까지"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7. 10. 19. ~ 11. 8. (20일간) : 제출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건강및”을 “건강 및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해당 연도 이자수입”을 “이자수입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”로, “시행일로부터 5년으”를 “2022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한차례”를 “한 차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해촉 할”을 “해촉할”로 한다.

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
제7조제1항 중 “정기회와 임시회”를 “정기회의와 임시회의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”을 “과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, 「지방회계법」 과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①·②
(생략)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,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단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3. (생략)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한 차례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해촉할 -----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7조(회의) ① -----

-----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기금운용 관계공무원)①·②
(생략)

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·지출·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8조(기금운용 관계공무원)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「지방회계법」 -----

-----.

제14조(준용) -----

-----과
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, 「지방회계법」과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--
-----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기금의 관리·운용 내용의 범위를 확대(‘해당 연도 이자수입’에 한정했던 것을 누적된 ‘이자수입’으로 변경)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금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이유정
연 락 처	02-3153-8858